

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의 시장 상황

1) 입찰시장과 비입찰 시장의 약가 괴리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 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 초래

(예: 입원중인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원내에서 조제 받는 경우, 퇴원환자가 퇴원시 지불했던 약제비와 퇴원 후 약국의 약제비와 비교 시 등)

2) 제네릭의 저가공급 및 오리지널 및 외자사 정가 공급

경쟁품이 많은 제네릭의 경우 공급가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오리지널 품목의 경우 저가로 공급할 이유가 없어 외자사 배불리기 및 토종제약사의 경쟁력 약화로 제약산업 붕괴 우려

3) 중소제약사와 대형제약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R&D비중이 높은 대형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 면제 혜택으로 제네릭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4) 종합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할 뿐 약가인하효과는 미미

5) 사용량연동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약가인하 기전 작동 중이므로 시장 교란과 불법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되어야 마땅

2. 개선 방향

실거래가 상환제로 유지하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이 있어야 함

1)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 실시하도록 제도화

2)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 의무화